생산판매실적 입력 안내(2018)

“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(수입)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(수입)량, 판매량을 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”
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(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)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6조(보고 및 검사)

제66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·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·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·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, 에너지절약전문기업, 에너지다소비사업자,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·사업장·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·에너지사용기자재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(보고 및 검사 등)

제33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효율관리기자재·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·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 : 연도별 생산·수입 또는 판매 실적

생산판매실적 입력 안내(2018)

- 제출기한 : 2019년 3월 31일까지
  (미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
- 대상 품목 (총29개 품목)
  - 전기냉장고, 김치냉장고, 전기냉방기, 전기세탁기, 전기냉온수기, 전기밥솥, 전기진공청소기, 선풍기, 공기청정기, 백열전구, 형광램프, 안정기내장형램프, 삼상유도전동기, 가정용 가스보일러, 어댑터·충전기, 전기냉난방기, 상업용 전기냉장고, 가스온수기, 변압기, 창세트, 텔레비전수상기, 전기온풍기, 전기스토브,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, 제습기, 전기레인지, 셋톱박스, 컨버터내장형 LED램프, 컨버터외장형 LED램프
- 제출 :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(http://eep.energy.or.kr)를 통해 모델별로 입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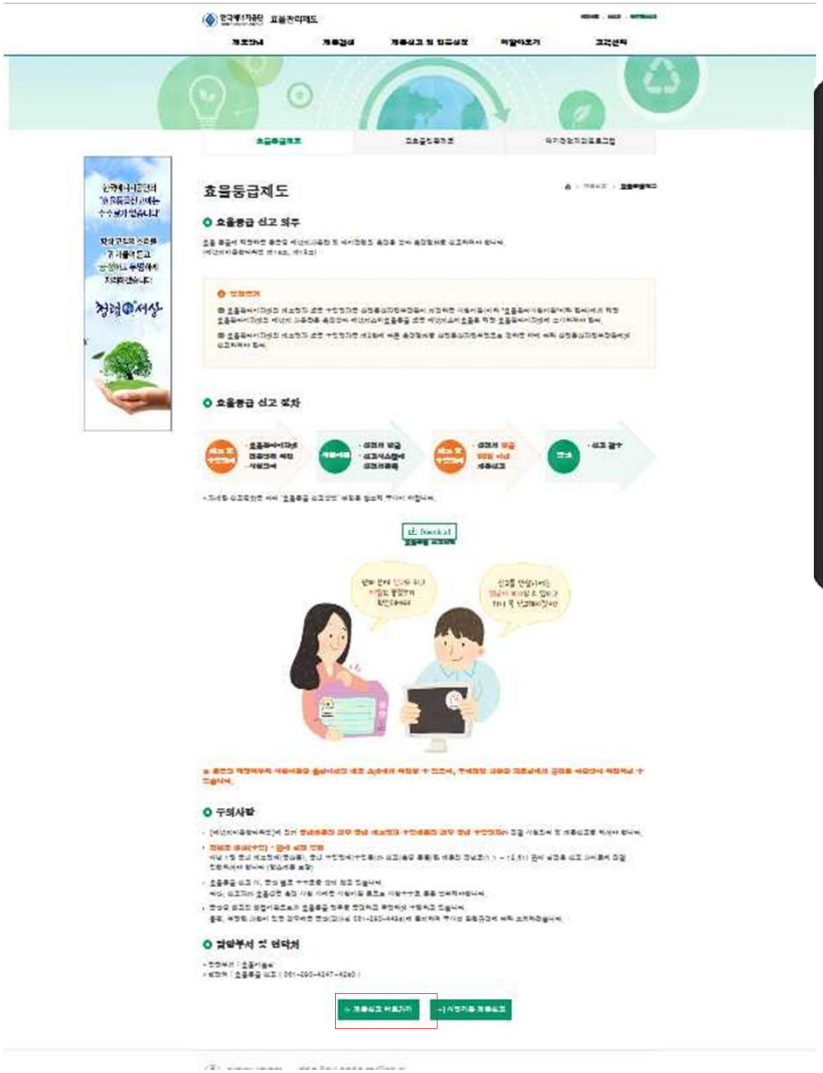
판매실적 입력 안내

- 효율관리제도 사이트(http://eep.energy.or.kr/)
- 제품신고 및 인증신청 – 효율등급제도 - 제품신고바로가기



판매실적 입력 안내

- 효율관리제도 사이트(http://eep.energy.or.kr/)
- 제품신고 및 인증신청 – 효율등급제도 - 제품신고바로가기





판매실적 입력 안내

- 효율관리제도 사이트(http://eep.energy.or.kr/)
- 제품신고 및 인증신청 – 효율등급제도 – 제품신고바로가기-로그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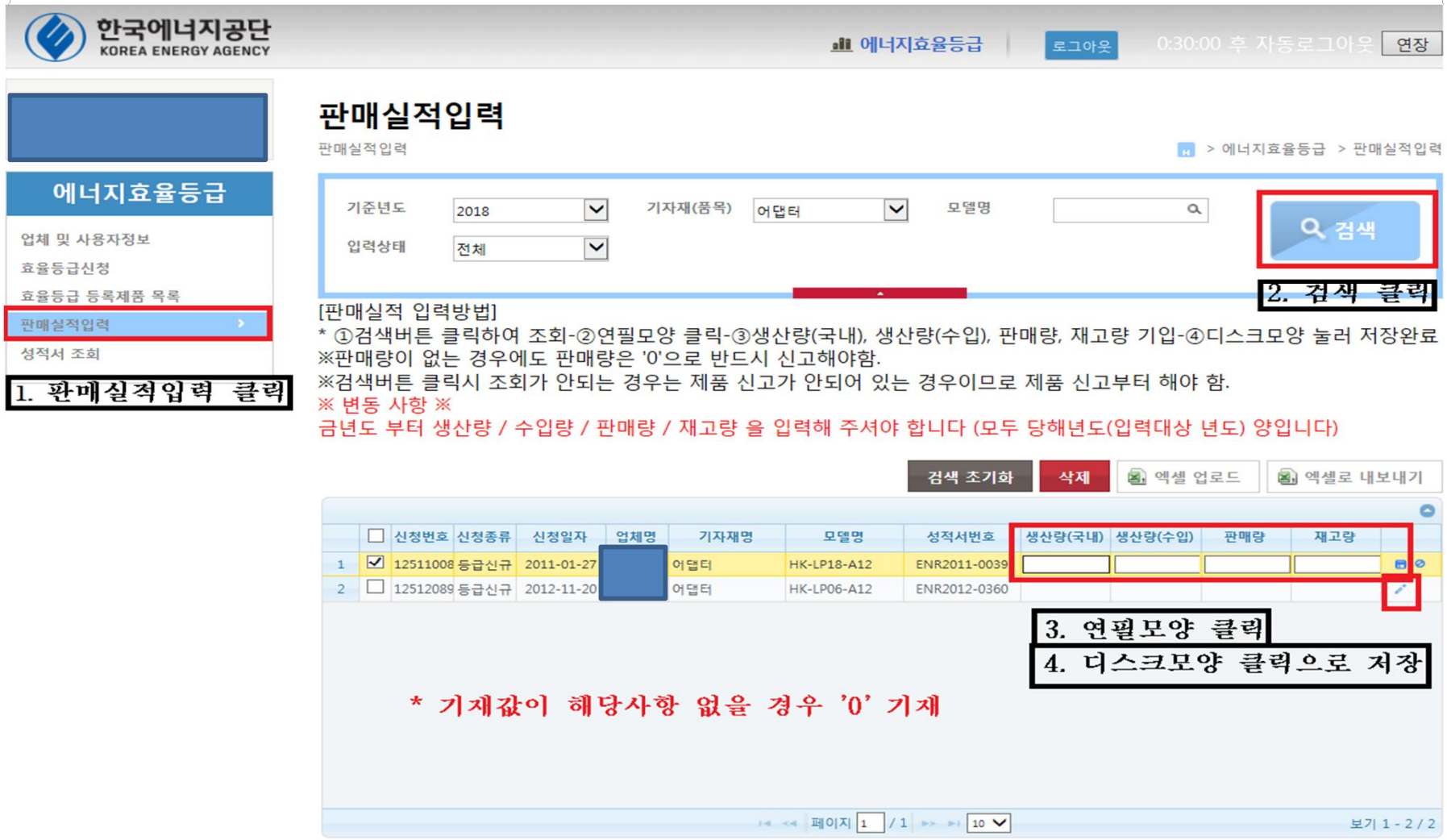


<로그인 안내>

- 일반 로그인 이용 :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아시는 경우이며, 패스워드를 잊어버린 경우 공인인증로그인을 한 후 비밀번호 변경 이용 (공단도 비밀번호는 안내 불가)
- 공인인증서 로그인 : 개인 공인인증서만 가능하며, 법인인증서 사용불가 (반드시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)
- 로그인 오류 등은 전산팀 (031-260-4578)으로 연락하여 인터넷 환경 등을 문의

판매실적 입력 안내

- 로그인 후 판매실적 입력 클릭 (단위 : 판매대수, 창세트는 kg)
- 검색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신고했던 내역이 나옴
- 모델별로 가장 오른쪽에 연필 표시를 눌러 생산량(국내,수입), 판매량, 재고량을 모두 기입하고 저장버튼(디스크모양) 눌러서 저장 완료 (해당 없을 시 '0' 기재)



판매실적 입력 시 주의사항

- 신고내역이 없는 제품은 판매실적을 입력할 수 없음 : 제품 판매전 신고 의무가 있음

제15조(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)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7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2.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

- 판매량이 없는 경우에도 판매량을 '0'으로 신고
- 기본적으로 판매량은 "대수"가 단위이며, 창세트만 단위가 "kg"임
- 판매량에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지 말 것

○ 회원 정리

- 퇴사자 삭제 ,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시 담당자 신규 가입
- 담당자 정보 업데이트(전화번호, 이메일 등)
- 담당자외 실무책임자 가입 (권장)

①로그인 후 첫 페이지에서 업체 및 사용자 정보 검토



② 사용자 정보 변경 시 수정 버튼 클릭 [사용 -> 사용 중지 등]



[회원 정리 요망]

회원 정보가 잘못 되어있으면 공단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를 원활히 받을 수 없습니다.

주기적으로 회원 목록, 업체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시기 바랍니다.